공고 제2017-39 호

2017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계획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3조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2017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 일

고용노동부장관

1. 목적

○ 훈련기관의 건전성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부지원 훈련 위탁 자격을 인증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품질관리체계 구축

2. 근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86호)

3. 인증평가 대상

(1) 인증평가 대상 기관

○ 아래 표에 제시된 인증평가 대상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

구분	평가대상 훈련
집체훈련	○ 실업자훈련 - 일반직종계좌제적합훈련(실업자 일반)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실업자 국기) ○ 재직자훈련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 기업맞춤형훈련, 채용예정자 훈련 포함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근로자 개인): **외국어 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신규기관도 인증평가 참여 필요**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및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운영기관 중 **파트너 훈련기관은 인증평가 참여 필요** ○ 특화훈련 - 일반고 특화훈련, 장애인 특화훈련 등
원격훈련	○ 실업자훈련 - 일반직종계좌제적합훈련(실업자 일반) ○ 재직자훈련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 인터넷원격훈련, 우편원격훈련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근로자 개인): 인터넷원격훈련 ※ 스마트훈련, 블렌디드(집체+원격) 과정

* 인증평가 대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은 평가 포기로 간주**하여 **인증유예 등급 부여**

** 본사와 지사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은 **각각 인증평가 실시**

○ '15년과 '16년에 **'3년인증' 등급 획득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다만, **1단계 기관건전성평가** 및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다년 인증 유지여부** 결정

(2) 인증평가 실시 구분

○ 인증평가 대상 기간 내 발생한 **주훈련대상 운영 실적 여부**를 기준으로 **실적보유기관**과 **신규기관**으로 구분

- **신규기관**은 **연 2회(상·하반기)** 인증평가 진행

구분	세부 기준
실적 보유기관	○ 훈련종료일이 2016.1.1.~2016.12.31.인 **인증평가 대상** 훈련을 실시한 집체훈련기관 및 원격훈련기관
신규기관	○ **(상반기)** 훈련종료일이 2016.1.1.~2016.12.31.인 집체훈련 및 원격훈련 실적이 없는 기관 ○ **(하반기)** 훈련종료일이 2016.6.1.~2017.5.31.인 집체훈련 및 원격훈련 실적이 없는 기관

(3) 인증평가 대상 기간(실적보유기관)

○ **훈련종료일이 2016.1.1.~2016.12.31.**인 훈련과정의 **운영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 성과평가 대상기간은 지표별 세부기준에 따름('17.7월말 기준으로 평가)

4. 인증평가 기준 및 배점(붙임1~2 참조)

(1) 집체훈련 실적보유기관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관건전성평가		1. 준법성 2. 재정건전성
역량평가 (100점)	1. 성과평가(60점)*	**[실업자 훈련기관]** 1. 취업률 2. 수요자 만족도 3. 중도탈락률 4. 훈련이수자 평가 결과 5. 개설률 6. 가점(취업자 임금수준)
		[재직자 훈련기관] 1. 수료율 2. 수요자 만족도 3. NCS 적용과정 비율 4. 훈련이수자 평가 결과 5. 개설률
	2. 현장평가(40점)	1. 기관경영 2. 훈련과정 관리 3. 시설 및 장비 4. 훈련교강사 5. 훈련생 관리

* 여러 종류의 훈련을 **병행하는 기관**의 경우 각각의 인증평가 대상기간의 훈련실시비중을 고려하여 점수 산출

< 집체훈련 실적보유기관 훈련실시비중 고려방식 >

① 실업자 훈련실시비중(%): [(실업자 평균훈련인원×1.5) / (실업자 평균훈련인원×1.5 + 재직자 평균훈련인원×1)] × 100%

② 재직자 훈련실시비중(%): [(재직자 평균훈련인원×1) / (실업자 평균훈련인원×1.5 + 재직자 평균훈련인원×1)] × 100%

③ 평균훈련인원 = [(A과정 실시인원 × A과정 훈련시간) + (B과정 실시인원 × B과정 훈련시간) + …] / 8시간

(2) 집체훈련 신규기관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관건전성평가	1. 준법성 2. 재정건전성
역량(현장)평가(100점)	1. 기관경영 2. 훈련과정 관리 3. 시설 및 장비 4. 훈련교강사 5. 훈련생 관리

(3) 원격훈련 실적보유기관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관건전성평가		1. 준법성 2. 재정건전성
역량평가 (100점)	1. 성과평가(60점)	**[실업자 훈련기관]** 1. 취업률 2. 수요자만족도 3. 중도탈락률 4. 과정운영실적 5. 자동모니터링시스템 연계적정성 6. 개설률 7. 가점 ▪ 취업자 임금 수준 ▪ 블렌디드(집체+원격)과정 개발·운영 실적
		[재직자 훈련기관] 1. 수료율 2. 수요자만족도 3. 훈련과정 등급 4. 자동모니터링시스템 연계적정성 5. 개설률 6. 가점 ▪ 스마트 훈련과정 개발·운영 실적 ▪ NCS 훈련개발·운영 실적 ▪ 블렌디드(집체+원격)과정 개발·운영 실적
	2. 현장평가(40점)	1. 기관경영 2. 훈련과정 관리 3. 훈련인프라 4. 훈련전담인력 5. 훈련생 관리

(4) 원격훈련 신규기관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관건전성평가	1. 준법성 2. 재정건전성
역량(현장)평가(100점)	1. 기관경영 2. 훈련과정 관리 3. 훈련인프라 4. 훈련전담인력 5. 훈련생 관리

* 현장평가 시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 항목 포함하여 진행

5. 인증평가 방법

구분	1단계 기관건전성평가	2단계 역량평가		
		성과평가		현장평가
		훈련성과	수요자 만족도	
대상	인증평가 대상 전체 기관	1단계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		
방법	서면평가	서면평가	HRD-Net 훈련생 수강평 또는 전화 등 설문조사	서면평가, 현장평가

* 기타 세부사항은 설명회 자료집 참조

(1) 1단계 기관건전성평가

○ **(준법성)** 훈련개시일 또는 종료일에 관계없이 **처분일자 기준 2016.1.1.~2016.12.31.**에 해당하는 훈련기관의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위반 이력, 행정처분 내역,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에 대하여 서면평가

-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위반 이력: 건당 10점 감점
- 부정수급, 허위 과정 인정 및 위탁체결,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이 있는 경우 각각의 처분 수준에 따라 감점

* 준법성평가는 고용노동부 행정처분 대상 전체 과정의 **처분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집행정지 기각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효력이 재발생**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감점

○ **(재정건전성)** '17년 훈련기관 인증평가 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 지방세 등 세금체납 여부** 및 **신용수준(법인사업자*의 경우 완전자본잠식여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등급 등)****에 대하여 서면평가

* 비영리법인 등 표준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기업신용보고서 등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 '18년부터는 신용수준에 대한 감점 수준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

(2) 2단계 역량평가

가. 실적보유기관 성과평가

실업자 집체훈련기관 성과평가(60점)
=취업률*(30점)+수요자만족도(10점)+중도탈락률(5점)+훈련이수자평가결과(10점)+개설률(5점)+가점(3점)

* 취업률(30점)=일반취업률(15점)+직전 2개년도 훈련수료자의 현시점 취업률(15점)

○ **(일반취업률)** 훈련수료자 중 훈련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및 창업한 인원의 비율(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취업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

* **산정기간**: 훈련종료일 기준 2016.1.1.~2016.12.31. 훈련과정으로 성과 측정

** 소정훈련일수 **70%이상** 출석한 **조기취업자**도 취업자에 포함하여 취업률산정

- 전체 평균 취업률을 기준으로 달성비율(해당 기관 취업률/전체 평균 취업률×100%)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 일반취업률 산정 시 취업자 가중치 부여방식 >

① 고용보험 미가입취업자 1명을 0.5명으로 적용(창업자 제외)
② 취약계층의 취성패I유형은 취업자 1명을 1.5명으로, 만 50세이상 중고령자는 1.2명으로 적용(중복 제외)
③ 기관 취업자 규모(①,② 적용전)에 따라 가중치 차등 적용

기관 취업자수	200명 미만	200명~400명미만	400명~600명미만	600명~800명미만	800명~1,000명미만	1,000명 이상
가중치	1	1.1	1.2	1.3	1.4	1.5

○ **(직전 2개년도 훈련수료자의 현시점 취업률)** 가중치 부여 없이 고용보험가입 취업자만을 취업자로 산정하고 **일반 취업률**과 **동일**하게 등급을 나누어 점수 부여

* **산정기간**: 훈련종료일 기준 2015.1.1.~2016.12.31. 훈련과정으로 성과 측정

** 소정훈련일수 70%이상 출석한 조기취업자도 취업자에 포함하여 취업률산정

○ **(수요자 만족도) 훈련생 만족도** 점수를 1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부여

○ **(중도탈락률)** 실시인원 중 중도탈락자의 비율을 산출하여 **평균 훈련시간***에 따라 일정수준 미만일 경우 만점(5점) 부여, 1%p 증가시마다 0.5점씩 감점

* 평균 훈련시간 500시간 미만 중도탈락률 7%, 500시간 이상 중도탈락률 10% 기준

○ **(훈련이수자평가 결과)** 훈련이수자 평가 실시 과정의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후 훈련이수자 평가 대상 과정수를 고려하여 평균 산출

* 금번 평가에서는 **'17년 상반기(6월말)까지**의 훈련이수자 평가 결과 점수 반영

○ **(개설률)** 승인과정 중 개설한 과정수 비율을 산출하여 달성비율(해당 기관 개설률/전체 평균 개설률×100%)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부여

* **산정기간**: 신청일 기준 2015.1.1.~2015.12.31. 승인과정으로 성과 측정

○ **(가점)** 고용보험가입 취업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 점수부여

재직자 집체훈련기관 성과평가(60점)
=수료율(20점)+수요자만족도(20점)+NCS적용과정비율(5점)+훈련이수자 평가결과(10점)+개설률(5점)

○ **(수료율)** 전체 평균 수료율을 기준으로 **달성비율(해당 기관 수료율/ 전체 평균 수료율×100%)**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 **(수요자 만족도) 훈련생 및 기업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점수를 2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 부여

* '18년부터는 재직자훈련도 온라인(HRD-Net)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반영 예정

○ **(NCS 적용과정 비율)** '16년도에 승인된 통합심사 과정 중 NCS 적용 과정 비율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점수부여

○ **(훈련이수자평가 결과, 개설률) 실업자 집체훈련기관과 동일**

재직자 원격훈련기관 성과평가(60점)
=수료율(20점)+수요자만족도(20점)+훈련과정등급(10점)+자동모니터링 시스템 연계적정성(5점)+개설률(5점)+가점(5점)

○ **(수료율, 수요자 만족도, 개설률) 집체훈련기관과 동일**

○ **(훈련과정 등급)** 평가대상연도에 운영한 훈련과정의 **등급**에 따라 평균점수 부여

○ **(자동모니터링시스템 연계적정성)** HRD-Net 과 모니터링 시스템(LOMS)의 수강 및 수료건수 일치율 및 동일건 중복 전송·불일치 데이터 송부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수강건수 일치율: HRD-Net과 모니터링시스템(LOMS)의 수강건수 일치율

* 수료건수 일치율: HRD-Net과 모니터링시스템(LOMS)의 수료건수 일치율

* 과다전송률: HRD-Net과 모니터링시스템(LOMS)의 동일건 중복 전송 또는 불일치 데이터 송부 여부

○ **(가점)** ①스마트훈련과정 개발·운영실적 여부 ②NCS과정 개발·운영실적 비율 ③블렌디드(집체+원격)과정 개발·운영실적 여부에 따라 점수부여

실업자 원격훈련기관 성과평가(60점)
=취업률*(30점)+수요자만족도(10점)+중도탈락률(5점)+과정운영실적(5점)+자동모니터링시스템 연계적정성(5점)+개설률(5점)+가점(5점)
* 취업률(30점)=일반 취업률(15점)+직전 2개년도 훈련수료자의 현시점 취업률(15점)

○ **(취업률, 수요자 만족도, 개설률) 집체훈련기관과 동일**

○ **(중도탈락률)** 실시인원 중 중도탈락자의 비율을 산출하여 20% 미만일 경우 만점(5점) 부여, 1%p 증가시마다 0.5점씩 감점

○ **(과정운영실적)** 전체 평균 운영 과정수를 기준으로 훈련기관 운영 과정 수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 **(자동모니터링시스템 연계적정성) 재직자 원격훈련기관과 동일**

○ **(가점)** ①고용보험가입 취업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점수부여, ②블렌디드(집체+원격)과정 개발·운영실적여부에 따라 점수부여

나. 현장평가

○ **(사전 서면평가)** 훈련기관이 인증평가 영역 및 항목에 부합하는 기관운영 체계와 구체적인 사례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사전에 서면평가 실시

* 자체평가보고서 **미제출 시** 인증평가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유예 등급**을 **부여**하며, **거짓·조작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작성된 내용이 **불성실할 경우**에는 현장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현장평가)** 평가위원이 훈련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관·훈련 운영 관련자료 확인, 시설·장비 점검, 기관 구성원과 훈련생에 대한 인터뷰 등을 통해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평가 항목별 보유 역량 평가**

구분	집체훈련	원격훈련
평가시간	2~5시간	
평가위원 수	훈련전문가 2명, 내용전문가 1~3명 등 총 3~5명	원격훈련전문가 2명, 전산전문가 1명 등 총 3명

* 지정된 일자에 현장평가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평가포기로 간주하여 '인증유예' 등급 부여
** 단, 훈련기관의 규모, 실시직종 등을 고려하여 평가시간 등은 조정 가능

6. 인증평가 결과 판정

(1) 1단계 기관건전성평가

○ '1. 준법성', '2. 재정건전성' 항목의 총점을 고려하여 적합 여부 판정

○ 기관건전성평가의 **총 감점**이 **20점 이상**일 경우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되어, 이후 2단계 역량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음

○ 기관건전성평가에서 **10점 이상 감점**되거나 **직전 2년간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을 받은 경우 **다년 인증(3년·5년)기관**에서 **제외**

(2) 2단계 역량평가

가. 실적보유기관

○ '1. 성과평가', '2. 현장평가' 등 2개 영역의 취득점수와 총점을 고려하여 5년인증, 3년인증, 1년인증, 인증유예로 인증 여부 및 등급 결정

[실적보유기관 인증평가 등급 판정 기준]

기관건전성평가	역량평가	인증등급
감점 20점 미만 (적합)	성과평가, 현장평가 각각 총 배점의 85% 이상* 득점	5년인증
	성과평가, 현장평가 각각 총 배점의 75% 이상** 득점	3년인증
	역량평가 총점 60점 이상	1년인증
	역량평가 총점 60점 미만	인증유예
감점 20점 이상 (부적합)		인증유예

※ 역량평가 총점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성과평가 또는 현장평가 점수**가 **각 배점의 40% 미만**일 경우 **과락으로 인증유예**

인증등급	실적보유기관 인증 유효기간
5년인증	○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로부터 5년 후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까지
3년인증	○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로부터 3년 후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까지
1년인증	○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로부터 다음 년도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까지 ○ 2018년도 인증평가를 받아야 함
인증유예	○ 2018년도 인증평가 신청 가능

* 인증등급 유효기간은 **HRD-Net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추후 인증평가 일정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실적보유기관 평가 시 **'15~'16년 인증평가**의 2단계 현장평가 점수와 '17년 성과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인증등급 조정

- 다만, 해당 기관이 **등급상향** 등을 위해 **희망하는 경우 현장 평가 재실시**

기존 등급	인증등급 조정 기준
3년인증 ('15~'16년)	○ 등급판정 당시 2단계 현장평가 점수(40점환산), '17년 성과평가 점수(60점) 각각 총 배점의 85%이상 득점 → 5년인증 상향
1년인증 ('16년 실적 보유기관)	○ 등급판정 당시 2단계 현장평가 점수(40점환산)와 '17년 성과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인증등급 조정

○ **다년 인증기관**의 경우 **최종적으로 관할 지방관서(고용센터)**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의 의견을 반영한 **인증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등급 확정**

○ 다년 인증기관은 1년 단위로 **'자율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 **인증받은 내용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기관건전성 및 훈련성과** 등에 대한 **다년 인증기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등급 유지여부 결정**

* 자율점검보고서는 매년 인증평가신청 마감일까지 HRD-Net 자율점검보고서 제출 메뉴에 탑재, 자율점검보고서를 요청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인증유예)될 수 있음

- **다년 인증기관 모니터링 결과 ①기관건전성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감점요인**(완전자본잠식 등)이 발생한 경우, **②훈련성과 (실업자 훈련기관: 취업률, 재직자 훈련기관: 수료율, 수요자 만족도)**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③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여 우수 훈련기관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년인증 등급 하향 조정 또는 인증취소

< 훈련성과 미달 판단기준 >

실업자 훈련기관	재직자 훈련기관
- 취업률이 **4등급 이하**이거나 **2년 연속 3등급**일 경우 ※ 일반취업률, 직전 2개년도 훈련수료자의 현시점 취업률을 각각 적용	- 수료율이 **4등급 이하**이거나 **2년 연속 3등급**일 경우 - 수요자 만족도가 **전체 평균의 80% 미만**이거나 **2년 연속 평균 미만**일 경우

나. 신규기관

○ 역량평가(현장평가) 점수로 인증 여부 결정

* 원격훈련기관은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충족/미충족 여부)을 포함하여 평가

○ 신규기관은 1년인증, 인증유예 등급으로 구분

[신규기관 인증평가 등급 판정 기준]

기관건전성평가	역량평가	인증등급
감점 20점 미만 (적합)	60점 이상	1년인증
	60점 미만	인증유예
	원격훈련 인정요건 미충족시	인증유예
감점 20점 이상 (부적합)		인증유예

인증등급	신규기관 인증 유효기간
1년인증	○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로부터 다음 년도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까지 ○ 2018년도 인증평가를 받아야 함
인증유예	○ 2017년 상반기 신규기관 인증평가에서 '인증유예' 기관에 한하여 하반기 신규기관 인증평가 재신청 가능 ○ 2018년도 인증평가 신청 가능

* 인증등급 유효기간은 **HRD-Net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추후 인증평가 일정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인증평가 결과 활용 및 공개

○ 인증평가 등급은 훈련과정 인정·승인 시 반영

* 인증유예 등급 및 무등급 기관은 과정심사 신청이 제한됨. 단, 상반기 원격훈련 신규기관의 인증평가 결과는 결과 발표 이후부터 적용

○ 다년 인증등급(3년·5년) 획득 시,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 혜택 부여

○ HRD-Net을 통해 인증평가 등급 및 평가 항목별 세부 점수를 공개하여 평가 관련 정보 제공

8. 인증평가 일정

(1) 실적보유기관

구분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인증평가 계획 공고	○ 2017년 인증평가 일정 및 기준 공고	1월
2. 인증평가 설명회	○ 주요 권역별 인증평가 설명회 실시	2월초
3. 인증평가 신청 및 서류 접수	○ 인증평가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자체평가 보고서 서류 제출(HRD-Net)	2월중순 ~ 2월말
4. 기관건전성평가 결과 통보	○ 기관건전성 부적합 판정 기관 인증유예 통보	3월중순
5. 현장평가 일정 통보*	○ 기관건전성 적합 판정 기관 현장평가 실시 일정 온라인 통보	4월초 ~ 5월말
6. 현장평가 실시	○ 훈련기관별 현장평가 실시	4월중순 ~ 7월말
7. 평가결과 통보	○ 5년인증/3년인증/1년인증/인증유예 등 인증평가 결과 온라인 통보	8월말
8.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 인증평가 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서 접수 ○ 이의신청 심의 및 결과통보	8월말 ~ 9월말
9. 평가결과 확정	○ HRD-Net 인증평가 결과 게시	9월말

* 상기 일정은 2017년도 인증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평가 일정은 방문 2주 전까지 안내 예정

(2) 신규기관

구분	상반기	하반기*
1. 인증평가 계획 공고	1월	
2. 인증평가 설명회	2월초	
3. 인증평가 신청 및 서류 접수	2월중순 ~ 2월말	6월초 ~ 6월중순
4. 기관건전성평가 결과 통보	3월초	6월말
5. 현장평가 일정 통보**	3월중순 ~ 3월말	6월말 ~ 7월말
6. 현장평가 실시	3월중순 ~ 3월말	6월말 ~ 7월말
7. 평가결과 통보	3월말**	8월말
8.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4월초	8월말 ~ 9월말
9. 평가결과 확정	4월중순**	9월말

* 신규기관에 한하여 연 2회 인증평가를 실시하며, 상반기 인증평가에서 인증유예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하반기 인증평가 재신청 가능

** 상기 일정은 2017년도 인증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평가 일정은 방문 1주 전까지 안내 예정

9. 인증평가 실시 기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인증평가센터)

10. 담당자 연락처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044)202-7320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인증평가센터**
- 전화번호: 1644-5113(내선 1번), 02)6943-4010
- 팩스번호: 02)6943-4025

[붙임1] 2017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집체훈련기관 평가기준

□ 실적보유기관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판정기준
기관건전성 평가	1. 준법성	시정명령	· 처분 당 1점 감점		· 적합: 감점 20점 미만 · 부적합: 감점 20점 이상
		당해 과정 위탁· 인정제한	· 처분 당 5점 감점		
		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	· 처분 당 7점 감점		
		전과정 위탁·인정 제한	· 제한기간 6개월 미만: 10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미만: 15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이상: 20점 감점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력	· 과태료 부과 1차: 10점 감점 · 과태료 부과 2차: 15점 감점 · 과태료 부과 3차: 20점 감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바·사·아항 참조		
		임금체불 이력	· 평가 대상 기간 중 임금체불 관련 이력이 있을 시 1인당 10점 감점		
		최저임금 위반 이력	· 평가 대상 기간 중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있을 시 1인당 10점 감점		
	2. 재정건전성	세금체납 여부	· 평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체납: 10점 감점 · 평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지방세 체납: 10점 감점		
		신용수준	개인사업자	· 평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신용등급 7~8등급: 5점 감점 · 평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신용등급 9~10등급: 10점 감점	
			법인사업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이하): 10점 감점 ※ 비영리법인 등 표준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기업신용보고서 등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table>
<tr><th colspan="2">평가영역</th><th colspan="2">평가항목</th><th>평가기준</th><th>판정기준</th></tr>
<tr><td rowspan="12">역량
평가
(100점
만점)</td><td rowspan="12">성과
평가
(60점)</td><td rowspan="6">실
업
자
훈
련</td><td>1. 취업률(30점)</td><td>• 일반취업률(15점)+직전 2개년도 훈련수료자의 현시점 취업률(15점)
- 일반 취업률(%): 전체 평균 취업률을 기준으로 달성비율(해당 기관 취업률/전체 평균 취업률×100%)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6개월이내 취업인원÷수료인원×100%)
(훈련종료일 기준 2016.1.1.~2016.12.31. 훈련과정으로 성과 측정)
- 직전 2개년도 훈련수료자의 현시점 취업률(%): 일반 취업률과 동일하게 5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 점수 부여 (현재시점 고용보험취업인원 ÷ 수료인원 × 100%)
(훈련종료일 기준 2015.1.1.~2016.12.31. 훈련과정으로 성과 측정)</td><td rowspan="12">• 5년인증: 성과평가·현장평가 각각 85% 이상 득점

• 3년인증: 성과평가·현장평가 각각 75% 이상 득점

• 1년인증: 60점 이상 (다년인증기관 제외)

• 인증유예: 60점 미만 (성과평가 또는 현장평가 총배점의 40%미만 득점)</td></tr>
<tr><td>2. 수요자만족도(10점)</td><td>• 훈련투입 요소 및 훈련효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td></tr>
<tr><td>3. 중도탈락률
(5점)</td><td>• 평균 훈련시간에 따라 일정수준 미만일 경우 만점(5점) 부여, 1%p 증가시마다 0.5점씩 감점
※ 평균 훈련시간 500시간 미만 중도탈락률 7%, 500시간 이상 중도탈락률 10% 기준
※ [(실시인원-수료인원-조기취업자) ÷ 실시인원] × 100%</td></tr>
<tr><td>4. 훈련이수자 평가 결과
(10점)</td><td>• 훈련이수자 평가 실시 과정(NCS 적용과정 및 40시간이상)의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후 훈련이수자 평가 대상 과정수를 고려하여 평균 산출
<table><tr><td>A등급</td><td>B등급</td><td>C등급</td><td>D등급</td><td>실시이력없음</td></tr><tr><td>10점</td><td>7점</td><td>5점</td><td>2점</td><td>2점</td></tr></table>※ 산출식: [(A등급 과정수×10) + (B등급 과정수×7) + (C등급 과정수×5) + (D등급 과정수×2)] ÷ ('16년 훈련이수자 평가 및 '17년1~6월 훈련이수자 평가 실시과정 수)</td></tr>
<tr><td>5. 개설률(5점)</td><td>• 승인과정 중 개설한 과정수 비율을 산출하여 달성비율(해당 기관 개설률/전체 평균 개설률×100%)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부여
(신청일 기준 2015.1.1.-2015.12.31.기준 승인과정으로 성과 측정)
※ (승인이후 개설한 과정 수 ÷ 승인과정 수) × 100%</td></tr>
<tr><td>6. 가점(3점)</td><td>• 고용보험가입 취업자의 임금수준(월평균보수액)에 따라 차등 점수부여</td></tr>
<tr><td rowspan="5">재
직
자
훈
련</td><td>1. 수료율(20점)</td><td>• 전체 평균 수료율을 기준으로 달성비율(해당 기관 수료율÷전체 평균 수료율×100%)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수료인원 ÷ 실시인원 × 100%)</td></tr>
<tr><td>2. 수요자만족도(20점)</td><td>• 훈련투입 요소 및 훈련효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훈련생 및 기업체 대상)</td></tr>
<tr><td>3. NCS 적용과정 비율(5점)</td><td>• 2016년도에 승인된 통합심사 과정 중 NCS 적용과정 비율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점수 부여
※ (NCS 적용 과정수 ÷ 2016년도 승인된 통합심사 과정 수) × 100%</td></tr>
<tr><td>4. 훈련이수자 평가 결과
(10점)</td><td>• 훈련이수자 평가 실시 과정(NCS 적용과정 및 40시간이상)의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후 훈련이수자 평가 대상 과정수를 고려하여 평균 산출
<table><tr><td>A등급</td><td>B등급</td><td>C등급</td><td>D등급</td><td>실시이력없음</td></tr><tr><td>10점</td><td>7점</td><td>5점</td><td>2점</td><td>2점</td></tr></table>※ 산출식: [(A등급 과정수×10) + (B등급 과정수×7) + (C등급 과정수×5) + (D등급 과정수×2)] ÷ ('16년 훈련이수자 평가 및 '17년1~6월 훈련이수자 평가 실시과정 수)</td></tr>
<tr><td>5. 개설률(5점)</td><td>• 승인과정 중 개설한 과정수 비율을 산출하여 달성비율(해당 기관 개설률/전체 평균 개설률×100%)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부여
(신청일 기준 2015.1.1.-2015.12.31.기준 승인과정으로 성과 측정)
※ (승인이후 개설한 과정 수 ÷ 승인과정 수) × 100%</td></tr>
</table>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판정기준
	현장 평가 (40점)	1. 기관경영(6점)	① 기관장은 직업훈련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가? ② 기관 발전을 위한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가? ③ 기관의 주요 정보보안관리를 하고 있는가?	
		2. 훈련과정 관리(8점)	① 산업체 수요 및 훈련생 요구에 기반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있는가? ② 훈련대상 및 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절차에 따라 훈련을 운영하고 있는가? ③ 훈련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훈련과정을 개선하고 있는가?	
		3. 시설 및 장비(10점)	① 훈련 운영에 적합한 훈련시설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② 훈련 운영에 적합한 훈련장비를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③ 훈련기관 자체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는가?	
		4. 훈련교 · 강사(10점)	① 훈련 운영을 위한 훈련교 · 강사 및 행정직원을 확보하고 있는가? ② 훈련교 · 강사 및 행정직원의 근로조건이 적절한가? ③ 훈련교 · 강사 및 행정직원의 업무 역량을 관리하고 있는가?	
		5. 훈련생 관리(6점)	① 훈련목적 및 내용에 적합한 훈련생을 선발하고 있는가? ②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조치하고 있는가? ③ 훈련생 및 수료생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가?	

□ 신규기관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판정기준
기관건전성 평가	1. 준법성	시정명령	· 처분 당 1점 감점		· 적합: 감점 20점 미만 · 부적합: 감점 20점 이상
		당해 과정 위탁· 인정제한	· 처분 당 5점 감점		
		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	· 처분 당 7점 감점		
		전과정 위탁·인정 제한	· 제한기간 6개월 미만: 10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미만: 15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이상: 20점 감점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력	· 과태료 부과 1차: 10점 감점 · 과태료 부과 2차: 15점 감점 · 과태료 부과 3차: 20점 감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바·사·아항 참조		
		임금체불 이력	· 평가 대상 기간 중 임금체불 관련 이력이 있을 시 1인당 10점 감점		
		최저임금 위반 이력	· 평가 대상 기간 중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있을 시 1인당 10점 감점		
	2. 재정건전성	세금체납 여부	· 평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체납: 10점 감점 · 평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지방세 체납: 10점 감점		
		신용수준	개인사업자	· 평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신용등급 7~8등급: 5점 감점 · 평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신용등급 9~10등급: 10점 감점	
			법인사업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이하): 10점 감점 ※ 비영리법인 등 표준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기업신용보고서 등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판정기준
역량평가 (100점 만점)	1. 기관경영(25점)	① 기관장은 직업훈련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② 기관장은 기관 운영을 위한 경영원칙을 보유하고 있는가? ③ 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목표와 실행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 ④ 현재 사업장에서 운영한 교육 또는 훈련은 향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과정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⑤ 기관의 주요 정보보안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	· 1년인증: 60점 이상 · 인증유예: 60점 미만
	2. 훈련과정 관리(20점)	① 산업체 수요 및 훈련생 요구에 기반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가? ② 훈련대상 및 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절차에 따라 훈련을 운영할 수 있는가? ③ 훈련생 성취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가? ④ 훈련생 성취수준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가?	
	3. 시설 및 장비(20점)	①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시설을 확보하고 있는가? ②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장비를 확보하고 있는가? ③ 훈련시설 및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가? ④ 훈련기관 자체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가?	
	4. 훈련교 · 강사(20점)	① 훈련 운영을 위한 훈련교 · 강사 및 행정직원을 확보하고 있는가? ② 훈련 운영을 위한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가? ③ 훈련교 · 강사 및 행정직원의 근로조건이 적절한가? ④ 훈련교 · 강사 및 행정직원의 업무 역량을 관리할 수 있는가?	
	5. 훈련생 관리(15점)	① 훈련생 모집을 위한 훈련 홍보 계획이 있는가? ② 훈련목적 및 특성에 부합하는 훈련생을 선발할 수 있는가? ③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개선할 수 있는가? ④ 훈련생 특성에 맞는 사후관리를 운영할 수 있는가?	

[붙임2] 2017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원격훈련기관 평가기준

□ 실적보유기관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판정기준
기관건전성 평가	1. 준법성	시정명령	· 처분 당 1점 감점		· 적합: 감점 20점 미만 · 부적합: 감점 20점 이상
		당해 과정 위탁· 인정제한	· 처분 당 5점 감점		
		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	· 처분 당 7점 감점		
		전과정 위탁·인정 제한	· 제한기간 6개월 미만: 10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미만: 15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이상: 20점 감점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력	· 과태료 부과 1차: 10점 감점 · 과태료 부과 2차: 15점 감점 · 과태료 부과 3차: 20점 감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바·사·아항 참조		
		임금체불 이력	· 평가 대상 기간 중 임금체불 관련 이력이 있을 시 1인당 10점 감점		
		최저임금 위반 이력	· 평가 대상 기간 중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있을 시 1인당 10점 감점		
	2. 재정건전성	세금체납 여부	· 평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체납: 10점 감점 · 평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지방세 체납: 10점 감점		
		신용수준	개인사업자	· 평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신용등급 7~8등급: 5점 감점 · 평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신용등급 9~10등급: 10점 감점	
			법인사업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이하): 10점 감점 ※ 비영리법인 등 표준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기업신용보고서 등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판정기준
역량 평가 (100점 만점)	성과 평가 (60점)	실업자훈련	1. 취업률(30점)	• 일반취업률(15점)+직전 2개년도 훈련수료자의 현시점 취업률(15점) - 일반 취업률(%): 전체 평균 취업률을 기준으로 달성비율(해당 기관 취업률/전체 평균 취업률×100%)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6개월이내 취업인원÷수료인원×100%) (훈련종료일 기준 2016.1.1.~2016.12.31. 훈련과정으로 성과 측정) - 직전 2개년도 훈련수료자의 현시점 취업률: 일반 취업률과 동일하게 5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 점수 부여 (현재시점 고용보험취업인원 ÷ 수료인원 × 100%) (훈련종료일 기준 2015.1.1.~2016.12.31. 훈련과정으로 성과 측정)	• **5년인증:** 성과평가·현장평가 각각 85% 이상 득점 • **3년인증:** 성과평가·현장평가 각각 75% 이상 득점 • **1년인증:** 60점 이상 (다년인증기관 제외) • **인증유예:** 60점 미만 (성과평가 또는 현장평가 총배점의 40%미만 득점)
			2. 수요자만족도(10점)	• 훈련투입 요소 및 훈련효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3. 중도탈락률(5점)	• 중도탈락률 20%미만일 경우 만점(5점) 부여, 1%p 증가시마다 0.5점씩 감점 ※ [(실시인원-수료인원-조기취업자) ÷ 실시인원] × 100%	
			4. 과정운영실적(5점)	• 전체 평균 운영과정수를 기준으로 훈련기관 운영과정수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점수부여 ※ (훈련기관 운영과정수 ÷ 전체 평균 운영과정수 × 100%)	
			5. 자동모니터링시스템 연계 적정성(5점)	• 수강건수 일치율(2점): 수강건수 일치율에 따라 구간으로 나누어 점수부여 • 수료건수 일치율(2점): 수료건수 일치율에 따라 구간으로 나누어 점수부여 • 과다 전송률(1점): 과다 전송률에 따라 구간으로 나누어 점수부여 ※ 수강건수 일치율(%): (LOMS 수강건수 중 HRD-Net과 일치하는 건수÷HRD-Net 수강건수)×100% ※ 수료건수 일치율(%): (LOMS 수료건수 중 HRD-Net과 일치하는 건수 ÷ HRD-Net 수료건수)×100% ※ 과다 전송률(%): [(LOMS 전체 수강건수 - LOMS 전체 수강건수 중 HRD-Net 과 일치하는 수강건수) / HRD-Net 수강건수]×100% - 단, 연계데이터 전송 실적이 없는 기관은 0점 처리	
			6. 개설률(5점)	• 승인과정 중 개설한 과정수 비율을 산출하여 달성비율(해당 기관 개설률/전체 평균 개설률×100%)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부여 (신청일 기준 2015.1.1.-2015.12.31.기준 승인과정으로 성과 측정) ※ (승인이후 개설한 과정 수 ÷ 승인과정 수) × 100%	
			7. 가점(5점)	• 고용보험가입 취업자의 임금수준(월평균보수액)에 따라 차등 점수부여(3점) • 블렌디드(집체+원격)과정 개발·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2점)	
		재직자훈련	1. 수료율(20점)	• 전체 평균 수료율을 기준으로 달성비율(해당 기관 수료율÷전체 평균 수료율×100%)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수료인원 ÷ 실시인원 × 100%)	
			2. 수요자만족도(20점)	• 훈련투입 요소 및 훈련효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훈련생 및 기업체 대상)	
			3. 훈련과정등급(10점)	• 평가대상년도에 운영한 훈련과정의 등급에 따라 평균점수 부여 ※(A등급 과정수×10점) + (B등급 과정수×5점) + (C등급 과정수×1점) / 훈련기관 전체과정 수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판정기준
			4. 자동모니터링시스템 연계 적정성(5점)	· 수강건수 일치율(2점): 수강건수 일치율에 따라 구간으로 나누어 점수부여 · 수료건수 일치율(2점): 수료건수 일치율에 따라 구간으로 나누어 점수부여 · 과다 전송률(1점): 과다 전송률에 따라 구간으로 나누어 점수부여 ※ 수강건수 일치율(%): (LOMS 수강건수 중 HRD-Net과 일치하는 건수÷HRD-Net 수강건수)×100% ※ 수료건수 일치율(%): (LOMS 수료건수 중 HRD-Net과 일치하는 건수 ÷ HRD-Net 수료건수)×100% ※ 과다 전송률(%): [(LOMS 전체 수강건수 - LOMS 전체 수강건수 중 HRD-Net 과 일치하는 수강건수) / HRD-Net 수강건수]×100% - 단, 연계데이터 전송 실적이 없는 기관은 0점 처리	
			5. 개설률(5점)	· 승인과정 중 개설한 과정수 비율을 산출하여 달성비율(해당 기관 개설률/전체 평균 개설률 ×100%)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부여 (신청일 기준 2015.1.1.-2015.12.31.기준 승인과정으로 성과 측정) ※ (승인이후 개설한 과정 수 ÷ 승인과정 수) × 100%	
			6. 가점(5점)	· 스마트훈련과정 개발 ·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2점) · NCS훈련 개발 · 운영실적 비율(1점) · 블렌디드(집체+원격)과정 개발 ·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2점) ※ NCS 훈련 개발실적(%): (NCS 적용과정수 ÷ 2016년도 승인된 과정수) × 100% ※ NCS 훈련 운영실적(%): (NCS 적용과정수 ÷ 2016년도 운영한 과정수) × 100%	
	현장 평가 (40점)	1. 기관경영(6점)		① 기관장은 직업훈련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가? ② 기관 발전을 위한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가? ③ 기관의 주요 정보보안관리를 하고 있는가?	
		2. 훈련과정 관리(8점)		① 산업체 수요 및 훈련생 요구에 기반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있는가? ② 훈련대상 및 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절차에 따라 훈련을 운영하고 있는가? ③ 훈련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훈련과정을 개선하고 있는가?	
		3. 훈련인프라(10점)		①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② 콘텐츠 및 LMS 오류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를 갖추고 관리하고 있는가? ③ 학습지원도구를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4. 훈련전담인력(10점)		① 훈련 운영을 위한 훈련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② 훈련전담인력의 근로조건이 적절한가? ③ 훈련전담인력의 업무 역량을 관리하고 있는가?	
		5. 훈련생 관리(6점)		①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조치하고 있는가? ② 훈련생 및 수료생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가?	

□ 신규기관

*** 사업주직업훈련개발지원규정 제6조와 관련하여 '[별표 1] 원격훈련의 인정요건'의 내용을 포함하여 평가 진행'**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판정기준
기관건전성 평가	1. 준법성	시정명령	· 처분 당 1점 감점		· 적합: 감점 20점 미만 · 부적합: 감점 20점 이상
		당해 과정 위탁· 인정제한	· 처분 당 5점 감점		
		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	· 처분 당 7점 감점		
		전과정 위탁·인정 제한	· 제한기간 6개월 미만: 10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미만: 15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이상: 20점 감점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력	· 과태료 부과 1차: 10점 감점 · 과태료 부과 2차: 15점 감점 · 과태료 부과 3차: 20점 감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바·사·아항 참조		
		임금체불 이력	· 평가 대상 기간 중 임금체불 관련 이력이 있을 시 1인당 10점 감점		
		최저임금 위반 이력	· 평가 대상 기간 중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있을 시 1인당 10점 감점		
	2. 재정건전성	세금체납 여부	· 평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체납: 10점 감점 · 평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지방세 체납: 10점 감점		
		신용수준	개인사업자	· 평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신용등급 7~8등급: 5점 감점 · 평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신용등급 9~10등급: 10점 감점	
			법인사업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이하): 10점 감점 ※ 비영리법인 등 표준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기업신용보고서 등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판정기준
역량평가 (100점 만점)	1. 기관경영(25점)	① 기관장은 직업훈련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② 기관장은 기관 운영을 위한 경영원칙을 보유하고 있는가? ③ 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목표와 실행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 ④ 현재 사업장에서 운영한 교육 또는 훈련은 향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과정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⑤ 기관의 주요 정보보안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	· 1년인증: 60점 이상 · 인증유예: 60점 미만
	2. 훈련과정 관리(20점)	① 산업체 수요 및 훈련생 요구에 기반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있는가? ② 훈련대상 및 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절차에 따라 훈련을 운영할 수 있는가? ③ 훈련생 성취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가? ④ 훈련생 성취수준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가?	
	3. 훈련인프라(20점)	①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시설을 확보하고 있는가? ②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개발(도입)하고 콘텐츠 및 LMS 오류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가? ③ 학습관리시스템(LMS) 모니터링 관리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가? ④ 학습지원도구를 개발하여 확보하고 있는가? ⑤ 학습지원도구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가?	
	4. 훈련전담인력(20점)	① 훈련 운영을 위한 훈련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② 훈련 운영을 위한 적절한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가? ③ 훈련전담인력의 근로조건이 적절한가? ④ 훈련전담인력의 업무 역량을 관리 할 수 있는가?	
	5. 훈련생 관리(15점)	① 훈련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②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가? ③ 훈련생 특성에 맞는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가?	